

충청북도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/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3.
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이유

현행조례의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·보완하고, 학원의 시설·설비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사회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학원시설은 동일건물 동일층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2개층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함 (안 제 3조제4항).
- 학원주위의 교육환경정화지역 범위를 강화함 (안 제6조).
- 학원설립시 적용되던 동일교습과정 학원과의 거리제한규정을 삭제하고, 동일교습과정의 동일건물내 설립금지조항으로 대체함 (안 제7조제1항).
- 학원설립요건중 적정시설규모를 강화함 (안 제7조제2항).
-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조항을 규정함 (안 부칙 제3조).
- 일부교습과정을 신설 또는 변경하며, 교습과정별 반당 시설·설비기준을 강화함 (안 별표1, 별표2).

□ 개정근거

-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[교육부공문 사회 01540 - 253 ('91. 6.18)]
-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

□ 조 례 안 : 별첨

□ 기타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관계법령 발췌서 : 별첨
-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: 별첨
-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시·도별 비교표 : 별첨
- 입법예고문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: 별첨

충청북도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제1항중 "강의에 적합한"을 "16.5㎡이상으로 하여야 하며, 강의에 적합한"으로 하고,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학원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층 이상에 시설할 수 있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교육환경정화 등)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장소는 학원이 위치한 건물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에 위치한 건물. 다만,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제외한다.

1. 건물의 연면적이 3,300㎡이상이고, 학원의 출입구로부터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출입구가 10m이상일 것.
2.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위치가 학원으로부터 수평거리 10m이내가 되는 동일층 또는 6m이내가 되는 직상층 및 직하층이 아닐 것.
3. 학원으로부터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영업행위가 보이지 않고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것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① 영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교습소가 위치한 동일건물안에는 동일교습과정의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. 다만,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는 건물연면적 3,300㎡이상의 건물로서 동일층이 아닐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7조제2항중 "(원칙변경 포함)"을 삭제하고, "적정규모의 시설"을 "적정 규모의 강의실 또는 열람실"로 하며, 동조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입시, 검정고시 학원 : 시지역 - 연면적 330㎡이상 1,980㎡이하, 시외지역 - 연면적 198㎡이상 1,980㎡이하
2. 외국어, 성인고시 학원 : 연면적 198㎡이상 1,320㎡이하

3. 독서실 : 연면적 165㎡이상 660㎡이하

4. 기타 강의실만 필요한 학원 : 연면적 99㎡이상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과외교습소) 영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교습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교육자로서의 육성을 위하여 학원 또는 교습소가 위치한 동일 건물안에는 동일교습과정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다. 다만,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는 건물연면적 3,300㎡이상의 건물로서 동일층이 아닐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4호중 "타 시·도로 전출하거나"를 삭제한다.

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독서실의 설립, 경영자는 남자독서실은 남자생활지도사를, 여자독서실은 여자생활지도사를 각각 채용하여야 한다.

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차 및 제3차의 행정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날부터 1년내에 동일한 사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한다.

[별표1] 실험·실습·실기 등 시설·설비 및 고구 등의 반당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표2] 실험·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정원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,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,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로 보며,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 신청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.

제3조(시설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증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, 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한 시설·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조례 시행이후 위치변경 및 정원변경에 따른 원칙변경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한 시설·설비기준에 의한다.